

#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학칙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1.>

**제2조(명칭)** 대학원의 명칭은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 <개정 2011.12.1.>

**제3조(설치과정)**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

**제4조(전공 및 정원)**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·전공 및 학생입학정원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09.6.26., 2015.7.27.>

**제5조(수업)** ①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제로 운영한다.

② 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로 행한다.

## 제2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

**제6조(직제 및 교수)** 대학원에 원장을 두고,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와 전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대학원위원회)** ① 대학원에 정보기술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1.12.1.>

② 위원회는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대학원장을 그 위원장으로 한다.

<개정 2015.7.27.>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
6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5.30.>

### 제3장 입학

**제8조(입학시기)**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. 재입학의 경우도 같다.

**제9조(입학자격)**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 과정

가. 국내외의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

나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연구과정 : 석사학위과정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10조(외국인의 입학자격)** ①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하는 경우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정하는 특별전형의 절차를 거쳐 입학할 수 있다.

② 외국인은 학생정원의 2%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직원의 입학)**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입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2조(지원절차)**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학원서(소정양식) 및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

2. 졸업증명서(다만,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, 기타의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격인정서로 한다.)

3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
**제13조(전형방법)**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과목은 필답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 전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. 특별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② 대학원의 연구과정 입학전형은 구술시험으로 한다.

### 제4장 등록, 휴학, 제적 및 재입학

**제14조(등록)**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②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, 수강신청을 마침으로써 완료된다.

<개정 2011.2.28.>

**제15조(휴학)**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으로 구분한다.

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.

**제16조(복학)**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.

② 복학절차는 학기초 등록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7조(제적)** ①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및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

② 수업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제적된다.

③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퇴학원의 처리는 대학원장을 경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 처리한다.

**제18조(재입학)**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(퇴학 또는 입학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)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제적전 동일과정에 한한다.

## 제5장 수업, 학점, 시험 및 학위수여

**제19조(수업연한)**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(4학기),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.

**제20조(재학연한)** ①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(10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②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수업잔여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

**제21조(합동강의)** 대학원의 교과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교 타 대학원과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.

**제22조(이수과목)** 이수하여야 할 이수과목 및 학점(교과과정표)은 따로 정한다.

**제23조(이수과목 선택)**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공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은 전공별로 정하며, 이수과목의 선택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4.6.12.>

**제24조(학점)** 재학 중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은 따로 정하며,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2.29., 2015.7.27.>

1. 논문학위제 : 24학점 <개정 2015.7.27.>

2. 학점학위제 : 30학점 <개정 2015.7.27.>

**제25조(학점의 특별인정)**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대학원의 설강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**제26조(학점인정)**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, 그 학업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27조(시험)** 시험은 매 학기말에 그 시간에 수업한 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행할 수도 있다.

**제28조(성적등급)** 학업성적의 등급·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 급	점 수	평 점
A <sup>+</sup>	95 ~ 100	4.5
A	90 ~ 94	4.0
B <sup>+</sup>	85 ~ 89	3.5
B	80 ~ 84	3.0
C <sup>+</sup>	75 ~ 79	2.5
C	70 ~ 74	2.0
F	69 이 하	0

**제29조(과정수료)** 각 전공과정의 수료는 4차 학기말부터 인정할 수 있다.

**제30조(수료증)** 대학원의 각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
**제31조(학위신청 자격시험)** ① 대학원은 졸업에 앞서 학위신청자격시험을 실시한다.

<항 삭제 2024.6.12.>

② 석사학위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공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,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 <개정 2024.6.12.>

③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2과목 이상으로 하고,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시험과목·시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

<개정 2017.5.30., 2024.6.12.>

**제32조(학위제)** ① 논문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7.>

② 학점학위제는 규정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7.27.>

③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시기·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7.27.>

**제33조(학위수여)** ① 학위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신청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각 학위제의 자격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제청으로 총장이 수여한다. <개정 2015.7.27.>

② 석사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학위기로써 총장이 행한다. <개정 2015.7.27.>

**제34조(학위종별)**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전공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11.25.>

전 공	학 위
컴 퓨 터 정 보 통 신 삭제 <2015.7.27.> 임베디드시스템 삭제 <2015.7.27.>	공학석사(컴 퓨 터) 공학석사(정보통신) 삭제 <2015.7.27.> 공학석사(임베디드시스템) 삭제 <2015.7.27.>

## 제6장 공개강좌, 위탁생 및 연구생

**제35조(공개강좌)** ① 공개강좌는 교양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,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수 있다.

③ 공개강좌의 과목이나 제목, 기간, 수강정원,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.

④ 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**제36조(위탁생)** 정부 각 기관의 재직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의 재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입학할 수 있다.

**제37조(연구생)** ①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력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
1. 4년제 대학 졸업자

2. 법령에 의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## 제7장 상별

**제38조(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등)** ① 총장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인천대학교 및 인천광역시 등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5.30.>

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**제39조(징계)**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
## 제8장 보칙

**제40조(준용규정)**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

칙을 준용한다.

**제41조(시행세칙)**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164호, 1998.12.18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171호, 1999.2.19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193호, 1999.11.30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206호, 2000.5.8.>**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학칙은 개정 전 입학생에게도 적용한다.

**부칙 <제220호, 2001.2.16.>**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학년도 이전에 정보처리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여 학위는 공학석사(정보처리)로 한다.

**부칙 <제234호, 2001.6.27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267호, 2002.7.3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405호, 2007.2.5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437호, 2008.2.29.>**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 <제497호, 2009.6.26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514호, 2009.11.23.>**

①(시행일) 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그 준비 행위로써 행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 <제612호, 2011.11.25.>**
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 <제629호, 2011.12.1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662호, 2012.12.4.>**

이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778호, 2015.7.27.>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학위제에 관한 경과조치)** 제24조, 제32조, 제33조의 개정학칙은 201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, 이 학칙 시행 전에 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.

**제3조(IT정책전공 및 정보시스템감리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** 이 학칙 시행 전에 IT정책전공 및 정보시스템감리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IT정책전공 및 정보시스템감리전공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.

**부칙 <제786호, 2015.12.14.>**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801호, 2017.5.30.>**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제868호, 2024.6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학칙은 시행 당시 재적생에게 적용되며, 수료생에게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.



[별표] <개정 2011.12.1., 2012.12.4., 2015.7.27. 2015.12.14.>

정보기술대학원 과정·전공 및 학생입학정원표

과 정	전 공	입학정원
석 사 학 위	컴 퓨 터 정 보 통 신 삭제 <2015.7.27.> 임베디드시스템 삭제 <2015.7.27.>	16명

정대원 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
생년월일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(○ ○ 전공) 석사학  
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○  
○석사(전공명)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논문제목 :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장 (학위) 성명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 석사(전공명)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총장 (학위) 성명

학위등록번호 :

정대원 석 제 호

학 위 기

성 명

생년월일 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(○ ○ 전공) 석사학  
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업을 성취하여 ○○석  
사(전공명)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장 (학위) 성명

위의 인정에 의하여 ○○ 석사(전공명) 학위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인천대학교 총장 (학위) 성명

학위등록번호 :